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 The law of packaging industryal waste

환경부 예규 제 193호(1999. 12. 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동조 제6항 및 제40조 제2호,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합성수지재질포장재등의 감량화방법·이행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999-150호, 1999. 9. 18, 이하 “감량화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상업포장”이라 함은 소매를 주로 하는 상거래에서 포장의 일부로 상품을 한 단위로 취급하기 위하여 하는 포장을 말한다.
- “수송용 포장”이라 함은 골판지 상자·철제상자·드럼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한 포장을 말한다.
-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장(長), 폭(幅), 고(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

4.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을 포함한다)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5. “필요공간용적”이라 함은 제품 개개의 보호와 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 제품의 보호와 완충을 위하여 사용되는 완충·고정재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6. “포장공간용적”이라 함은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용적을 말한다.

7. “포장공간비율”이라 함은 포장용적에 대한 포장공간용적의 백분률을 말한다.

8. “포장용기(또는 상자) 두께”라 함은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두께를 말한다.

9. “포장횟수”라 함은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써운 횟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포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수송용 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상사업자의 관리) 서울특별시장·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시행령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 역내의 제조자 · 수입자 및 판매자(이하 “대상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등을 위하여 지도 · 점검을 실시하는 등 포장폐기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장 과대포장의 억제

### 제1절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의 적용

제5조(대상제품의 범위)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식품류

##### 가.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 〈식품공전에 의한 가공식품〉

농 · 임 · 축 · 수산물 등 식품원료에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분쇄 ·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변형시키거나 서로 혼합한 것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 · 포장한 식품(음료, 주류, 제과류 및

건강 · 기호식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농 · 임 · 축 ·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등의 처리 과정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나. 음료

과실 · 채소류 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유산균 음료(살균 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 혼합음료, 음용의 유가공품 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달류 · 인삼제품 등 건강 · 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은 포함되나, 주류 및 분말 · 엽상(葉狀) · 분상(粉狀)의 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 다.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 · 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규정된 것(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말한다.



## 라. 제과류

곡분, 당류 등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빵 및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추이김, 채류, 아이스크림 제품류(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아이스크림 분말류, 아이스크림 믹스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이김) 등의 제품을 말한다.

## 마. 건강·기호식품

식품공전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과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벌꿀 및 다류(침출차·추출차·분말차·과실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등의 제품을 말한다.

### 〈식품공전에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주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추출·농축·정제·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뱀장 어유가공식품 등 정제어유가공식품, 로얄젤리 가공식품, 효모식품, 화분가공식품, 스쿠알렌식품, 효소식품, 유산균식품, 조류식품, 감마리놀렌산식품, 배아기공식품, 레시틴가공식품, 옥토사코사놀식품, 알콕시글리세롤식품, 포도씨유식품, 식물추출물 발효식품, 단백식품류, 엽록소 함유식품, 버섯가공식품, 알로에식품, 매실추출물식품, 칼슘함유식품, 자라가공식품, 베타카로틴식품, 키토산가공식품, 프로폴리스식품)을 말한다.

## 2. 화장품류

### 가. 화장품

약사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을 말한다.

### 〈약사법 규정에 의한 화장품〉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

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찰(塗擦)·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목욕용 제품, 눈화장용 제품, 방향용 제품, 두발용 제품(의약부외품인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를 제외한다), 염모용 제품(모발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키는 것에 한하며, 의약부외품인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를 제외한다), 메이크업 제품, 매니큐어용 제품, 면도용 제품, 기초 화장품 제품, 일소 및 일소 방지용제품 등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 나. 세제류

각종 형태의 비누, 합성세제, 샴푸·린스, 야채·과실·기타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등의 세척제 등을 말한다.

## 3. 잡화류

### 가. 원구·인형류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 기타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 동력식과 무동력식을 불문한다.

다만 아동용 삼륜자전거, 비디오게임기 등 모형이 아닌 제품은 제외한다.

### 나. 문구류

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한다.

### 다.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 4. 의약부외품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부외품을 말한다.

###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부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것(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모기 등의 구제 또는 방지제로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중 살충제 성분함량 기준” 규정에 의한 제충국류(천연품 및 합성품)를 증성분으로 하는 제제·기피제·유인살충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제·탈염제, 다만 2, 4-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재는 제외한다),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지면류제를 포함하나 대한약전 수재(收載) 위생품은 제외한다) 및 콘텍트렌즈 관리용품)을 말한다.

### 5. 의류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한다) 제품을 말한다.

### 6. 종합제품

가공식품, 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함) 또는 신변잡화류의 제품으로서 1회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제6조(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의 적용)

① 대상제품별 포장공간비율·횟수기준은 규칙 제4조 제2항관련 별표1에 의하고 포장공간

비율측정은 한국산업규격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방법(KSA 1005-1996)에 의한다.

②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 및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제품별 포장공간비율은 규칙 제4조제2항관련 별표1에 규정된 포장공간비율에 10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사례 : 종합제품의 경우〉

- 허영포장공간비율 : 25%이하
- 종이 또는 펠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완충재를 사용시 허용 포장공간비율 : 35% 이하( $=25+1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껌·사탕 등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2. 제품이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부풀려진 부분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접시에 대한 포장횟수

4.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에 있어서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포장의 포장공간비



율 및 포장횟수.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제품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7조(판매자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의 적용) 판매자가 제품 또는 포장된 제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4조제2항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자의 제품포장을 포함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산정한다.

## 제2절 포장검사명령

### 제8조(포장검사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이 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및 규칙 제5조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기준(이하 “포장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판매자가 제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적용방법, 제3장제1절에서 정하는 포장재질

기준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측정방법을 참조하여 기준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장검사명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규칙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을 표시한 제품에 대하여는 표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포장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규칙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말한다.

### 제9조(포장검사결과서의 제출)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제조자 등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이미 포장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포장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포장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호 및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제조자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출한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포장재질의 규제

#### 제1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및 밤포플라스틱렌제 포장재 사용규제

제10조(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 사용의 규제)

① 규칙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재질의 포장재 사용규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용기·포장표지(라벨)등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첨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2. 2001. 1. 1이후 포장용기·포장표지(라벨)등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로 된 수축초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 〈첨합·수축포장·도포의 개념〉

○ **疊合(라미네이션)** :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기할 목적으로 2매 또는 그 이상의 같은 종류의 것이나 다른 종류의 지지체를 접합하는 것

○ **收縮包裝** :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수축시켜 물품을 고정

#### 유지하는 포장방법

○ **塗布(코팅)** :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물·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압출·침적(浸積)·취부(吹付)·호인(糊引)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막으로 피복하는 것

②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러한 제품에 폴리비닐크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변질방지 곤란 및 포장재의 터짐 등 포장재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한다.

####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 및 석유가스(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로서 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대한약전에 수재(收載)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다)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악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

### 3. 동물유 및 식물유

각종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제품

### 4. 화공약품 및 농약

#### 가. 화공약품

염류, 황산, 질산, 비료, 전지, 도금, 카야바이드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의 공정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화학공업에서 생산된 약품(농약 및 의약품을 제외한다)

#### 나. 농약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옹애·선충·바이러스 기타 동·식물(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및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기피제·유인제·전착제 및 약효증진제

###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냉동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

### 제11조(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의 사용규제)

①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규제되는 포장재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및 폴리스티렌페이퍼(PSP)로 만든 완충재·고정재·용기 등 포장재를 말한다.

②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이 규제되는 제품은 제5조제3호 가목에 규정된 완

구·인형류 및 동조제6호에 규정된 종합제품을 말한다.

## 제2절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 제12조(대상포장재의 범위)

① 규칙 제5조의 2 및 감량화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등이 연차별로 감량화하여야 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이하 "대상 포장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란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받침(난좌) 또는 팩. 다만, 계란받침(난좌)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덮개는 제외한다.

2. 파일포장 중 사과와 배에 사용하는 파일받침(난좌)

3. 컵라면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컵용기

4. 화장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가.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의 받침접시

제5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및 세제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나. 잡화류 중 완구·인형류의 받침접시

제5조제3호가목의 완구·인형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다. 종합제품의 받침접시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및 화장품(세제류 포함)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 5. 기타 포장재

각종 용기류·시트류·받침접시류 등 규칙 별 표1에 규정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포장재를 제외한다)로서 2002년도부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을 적용한다.

### 제13조(감량화목표율의 적용)

① 제12조제1항 각호의 포장재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량화 목표율은 규칙 제5조의2제1항관련별표 2에서 규정된 연도별 목표율에 의하며, 규칙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에 적용하는 감량화목표율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의 산정은 회계연도 단위로 하며, 제조자 등이 규칙 제5조의2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기간중 판매된 제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감량화목표율을 적용한다.

### 제14조(재활용단체의 회수약정체결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단체가 합성수지재질 포장폐기물의 회수약정체결을 요청한 때에는 회수·재활용·처리시설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회수약정의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감량화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단체가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수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감량화목표율 이행여부 확인 등)

① 합성수지재질포장재 감량화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량화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감량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여부

- 가. 대상제품의 생산품목 및 생산제품명·용량·받침접시 종류별 판매현황
- 나. 생산제품명·용량·받침접시별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간사용현황
- 다. 감량화목표율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법 등

2.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자별 감량화목표율 이행여부. 이 경우 다음 각목의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감량화목표율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가. 감량화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02년도부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량화 추진실적
- 나. 대상제품 생산·판매실적 및 포장재 구매·사용실적
- 다. 자체 또는 위탁에 의한 대상포장재 감량·회수·재활용·처리실적

3. 감량화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의 회수약정이행 여부

4. 감량화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가 제출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등



②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가늠한다.

### 제3절 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의 연차별 감량

제16조(대상완충재의 범위)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감량화하여야 하는 완충재(이하 “대상완충재”라 한다)는 규칙 제9조제1항관련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이상인 텔레비전·냉장고·전자레인지·에어컨디셔너·페스널컴퓨터(모니터를 포함한다)의 포장에 사용하는 완충재로서 스티로폼·플라스틱 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제17조(감량화목표율의 적용 등)

① 가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규칙 제9조제1항관련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전제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9조제1항 및 감량화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여부

가. 연간 대상가전제품 품목별 생산량·완충재 사용량

나. 부과감소, 재질대체 등에 의한 완충재 사용감량 목표율 또는 회수·재활용 처리목표율 및 그 추진방법

2.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 이행여부. 이 경우 다음 각목의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감량화 목표율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가. 감량화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량화 추진실적

나. 대상가전제품 생산·판매 및 완충재 구매·사용실적

다. 자체·판매망 또는 위탁에 의한 대상포장재 감량·회수·재활용처리 실적

3.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 및 감량화규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

4. 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재를 회수하는지 여부

### 제4장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민관협동 등

제18조(포장표시의 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제조자 등에 대하여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포장횟수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9조(리필제품 생산의 권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동조각호의 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해당 비율 이상의 리필제품을 생산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자에 대한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

제 권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대형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21조(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 · 점검)

-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조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도 · 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유통 ·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지도 · 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2. 합성수지재질포장재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 · 점검 : 연 1회이상

3.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 · 점검 : 연 1회이상

4. 가전제품 판매시 포장재 회수여부에 대한 지도 · 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5. 재활용단체의 회수약정 이행여부 및 합성수지 포장재 회수 · 재활용 ·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정기점검은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별 설정에 따라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설 · 추석 등 명절 및 연말연시 등에 실시한다.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수청장은 지도 · 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대상 사업장 등 대상업소 현황
2.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4. 중점 점검사항
5.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 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도 ·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 · 위생 · 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자료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지도 · 점검 방법 및 요령)

① 유통 ·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주요 지도 · 점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감량화 대상 사업장 및 판매자 등에 대한 지도 · 점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23조(지도 · 점검결과의 처리절차)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제품의 구입 및 포장검사의뢰, 검사명령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도 · 점검결과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의 제품의 제조자 등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검사



명령 또는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청무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품의 제조자 등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관할 구역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처분을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이미 제조된 포장재의 보유현황, 포장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기간내에 이행이 불가능하여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일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 만료일 또는 이행완료 신고일부터 10일내에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기간이 지나서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명령을 받고서도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과태료 부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완료일 등의 기준) 제품에 대한 포장기준의 적용기준 및 이행명령에 따른 이행완료일 등의 기준은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제품의 경우에는 그를 구성하는 제품중 가장 최근에 제조된 것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홍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사업자에게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계도하고, 주민들이 적정포장제품 및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을 구매하도록 홍보하는 등 포장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점검결과제출) 시·도지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등에 대한 조치사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항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ko]